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14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김미애 · 안상훈 · 김대식
김민전 · 김성원 · 이종욱
최보운 · 윤영석 · 조경태
김재섭 · 박준태 · 조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요건과 절차, 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양부모가 특정 아동을 지정하여 입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취지에서 아동을 가정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아동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애착관계를 형성한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

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가정의 가정위탁보호자가 해당 아동을 입양하고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가정위탁보호자와 아동을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으로서 제2

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입양의 원칙) ① <u>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u></p> <p>② (생 략) <u><신 설></u></p> <p>제20조(결연) ① (생 략) <u><신 설></u></p> <p>② (생 략)</p> <p>제21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p>	<p>제3조(입양의 원칙) <u><삭 제></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제20조(결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가정의 가정위탁보호자가 해당 아동을 입양하고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가정위탁보호자와 아동을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21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① ----- ----- ----- -----</p>

<p>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제20조제2항</u>에 따른 결연확 인서</p> <p>5. (생략)</p> <p>② ~ ⑥ (생략)</p>	<p>-----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20조제3항</u>----- ---</p> <p>5.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	--